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77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이수진·송옥주·서미화

전진숙・김 윤・김정호

윤종군 • 위성곤 • 김문수

이건태 • 민병덕 • 손명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나 공공 연하게 다른 사람이나 사자를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 지 않음.

최근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 별한 조롱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 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제가 어려 운 실정임.

이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 또는 사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 또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며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고자 함(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6, 제44조의7, 제44조의10,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전단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 중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한다.

제44조의6제1항 중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 제2호의3 및 제3호"로 한다.

- 2의2.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 손하는 내용의 정보
- 2의3.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
- 2의4. 공공연하게 사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

제44조의10제1항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사생활의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사생활의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제3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0조의2를 제70조의4로 하고,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0조의2(벌칙)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자를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0조의3(가중처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재난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제70조제1항·제2항 또는 제70조의2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
호) ① 이용자는 <u>사생활 침해</u>	호) ① <u>사생활 침해,</u>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u>명예훼손 또는 모욕</u>
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	
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③
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u>사</u>	<u>X</u> }
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 교육 •	
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	
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	①
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u>사생활 침해나 명예훼</u>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u>손</u>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또는 모욕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	
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 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 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 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 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 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
<u>사생활 침해,</u>
명예훼손 또는 모욕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
구) ①
사생

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있다.

② ~ ④ (생 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전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u>활</u>	침ㅎ	∄,	명여	훼선	<u>는</u> 	또는	=]	모 욜	<u>-</u>
	2	~	4	(현	행괴	- 7	같음	.)		
4]	443	조의	7(불	불법	정보	.의		유무	통금	[ス]
	등)	1								
	1. •	2.	(현	행고	나 같	음)			
	<u>2의</u>	<u> 2.</u>	공급	<u> </u>	하게		거ろ	[의	入	<u> </u>
	<u></u>	을 드	러	내야] 시	-자	(死	者)	의	명
		ᆌ를								
		<u> 3. </u>							<u> </u>	<u> </u>
		교육							_	- ^
	·) O	14	-14-	는 여	ਨ 기	1 /	ヘトス	ᅡ듣	Ę	고모

3. ~ 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 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 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 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 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u>사생</u> <u>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u>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

<u>하는 내용의 성보</u>
3. ~ 9.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제1</u>
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
의4까지, 제3호부터 제6호
제1항제2호, 제2
호의3 및 제3호
· ③ ~ ⑤ (현행과 같음)
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생활의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
<u>욕</u>
<u>-1</u>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② (생략)
-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 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생 략) 제70조(벌칙) ①·② (생 략)

<u><신 설></u>

③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생활의 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
④ (현행과 같음)
세7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u>수</u>)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
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 ⑤ 제3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 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70조의2(벌칙)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 연하게 사자를 모욕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고 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70조의3(가중처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재난피해자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제70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70조의2제1항 ·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u>제70조의2</u> (벌칙) (생 략)	<u>제70조의4(</u> 벌칙) (현행 제70조의2
	와 같음)